

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|--|
|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| <h1>보도자료</h1> | 2016. 1. 29(금) | |
| | | 작 성 문 의 |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민성호 (Tel. 044-200-2341)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장 신강민 (Tel. 044-200-2346)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정책과장 김성곤 (Tel. 044-200-2379)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유재욱 (Tel. 02-2100-0413)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 강홍필 (Tel. 02-2100-0824)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전종민 (Tel.043-719-2161) |
| 엠바고 | 29일 10시 30분 (회의종료) 이후 사용/ 모두말씀 별도 배포 | | |
| 공동배포 | 안전처(소방 역량 강화, 설 명절 안전, 1월 28일 사전브리핑) 식약처(수입식품 안전, 1월 27일 약식 간담회) | | |

“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 치료비,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”

- 소방차 미양보차량 과태료 대폭 인상(5~6만원 → 20만원)
 - ‘해외현지 방문검사제’를 통해 수입 이전단계에서부터 식품안전 확보
 - ‘안전한 설 명절’ 위해 24시간 비상상황체계 가동
- 정부는 29일(금)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‘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’를 열어 「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」, 「설 명절 안전대책」, 「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」을 논의·확정하였다.
- 황 총리는 취임 이후 ‘안전총리’를 자임하면서, 매월 ‘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’를 주재(‘15년 6회 개최)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장·산업단지·학교·야영장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음
- * [붙임] ’15년 ‘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’ 개최 실적

- 특히 안전과 관련된 안전현장도 빠짐없이 직접 방문·점검하여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오고 있다
- * 취임후 '16.1.29까지 안전현장 행보 46회

-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첫 번째 회의로, 황 총리는 지난 25일에도 금일 회의 안전과 관련된 수입식품 안전현장(경기도 용인 보세창고)을 방문하여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.
- 황 총리는 이날 논의에 앞서, “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”면서
 - “올해는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라고 인정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”고 밝혔다.

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

- 먼저, 정부는 「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.
 - 이번 대책은 “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”는 황총리의 지시('15.11.10)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수립하였다.
- 대책에는 △소방 출동인력 확충, △노후·부족 소방장비 보강, △소방차 출동로 확보, △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, △소방관 처우개선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5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 되었다.
 - 먼저, 부상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화상치료나 의수 구입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부상 소방관에게

큰 부담이 되었던 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,

-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*하며,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**하고,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***할 예정이다.

* (현행) 공무상요양비 본인 先부담 後환급 ⇨ (개선) 국가 先부담 後정산

** 화상치료(성형) 등 특수요양비 상향 조정(인사처, '16.1월)

*** 기관 간 정보공유, '기관확인서' 등으로 구비서류 대체

- 또한, 골든타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·정차 차량을 지자체(견인업체)와 협조하여 즉시 견인하고,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*할 계획이며,

* (현행) 승용 5만원, 승합 6만원 → (개선) 모든 차량 20만원

-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
-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3년간('15~'17년) 소방 안전교부세 등 총 9,811억*을 집중 투입된다.

(개인장비 15년 완료, 소방차 등 공용장비 '17년까지 완료)

* 소방안전교부세 7,628억원, 국고보조 1,856억원, 응급의료기금 327억원

- 황총리는 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특히 “소방관 폭행,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*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”이라면서

* 소방특사경 인원 확대(1,073명→1,893명)로 소방방해사범 직접 사법처리 원칙('16상),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는 가중 처벌(소방기본법 개정, '16상)

- “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

위한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“도 덧붙였다.

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

- 이어, 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’ 본격 시행(2월 4일)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「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- 정부는 해외제조업체 등록 의무화 및 해외현지 방문검사제를 통해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기로 하였다.
 - 현지 방문검사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.
-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·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,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*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.
 - * 업체명, 소재지, 식품종류,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
-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, 국내·외 정보를 종합·분석하여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
 - 상습적인 유해식품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검사하여, 법 위반사례 발견시 영구히 퇴출시켜 나갈 방침이다.
 - * 수입자 : (우수업체) 신속검사, (일반업체) 현행수준 검사, (특별관리업체)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
 - ** 수입식품 : (1등급) 현행수준 검사, (2등급) 최초 수입부터 5회 정밀검사 (3등급) 1~2년 동안 집중 정밀검사
- 유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,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*를 의무화하고,

-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.

* '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'을 신설

- 황총리는 지난 25일 현장방문(수입축수산물 검사현장)에 이어서 “수입 식품안전은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단계에서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,
 - “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‘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’이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”고 지시하였다.

설 명절 안전대책

-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「설 명절 안전대책」을 추진한다.
 - 설 연휴 대비 특별안전대책기간(2.5~2.11)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,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종합상황실은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.
 - * 전국 경찰, 소방·해경 특별경계근무 실시(2.5~2.11)
 - 또한,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일일 평균 416만대(15년, 404.7만대/일)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 - 특별교통대책기간(2.5~2.10)을 운영,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안전한 귀성길·귀경길 여객 수송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.
 - 겨울철 폭설·한파 대책으로는 제설 취약구간(2,148개소)에 제설 장비·인력* 등을 사전에 전진 배치하고,
 - * 국토부·도로공사 : 4,863대, 4,374명 / 지자체 : 5,705대, 146,640명

- 각 지자체가 **한파대책 종합상황실**을 운영하는 한편, 산간마을 등 **취약계층** 지원을 포함한 **겨울철 자연재난 대책**도 마련하였다.
- 아울러, **구제역 확산방지**를 위해 비상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, 백신 일제접종(전남·북) 등 관계기관 합동 **방역대책**을 추진하고,
 - **응급 비상진료 대책**으로는 **휴일 당번 의료기관·약국 지정**(총11,060개소)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.
 - * 24시간 비상진료 응급의료기관(540개), 당직 의료기관(4,260개), 휴일지킴이약국(6,260개소)
-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**사전 예방활동의 일환**으로는 분야별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.

△ **다중이용시설**(전통시장,터미널 등) 소방점검(1.18~1.29) 및 가스·전기 안전점검(1.25~25)
 △ **교통시설**(도로·역사·여객선·공항) 사전 안전점검
 * 도로 : 1.4~2.4, 철도 : 1.18~1.29, 여객선 : 1.7~1.15, 유도선 : 1.22~2.4, 공항 : 1.25~1.28
 △ **고위험 사업장**(3,687개소) 노·사 합동점검(2.1~2.5)
 △ **설 성수품**(식품·의료기기) 합동단속·점검(1.18~1.27) 및 표본수거·검사(1.18~1.29)

- 한편, 국민안전처는 **전국 재난·안전 상황관리를 총괄**하고, 각 기관들이 분야별 안전대책을 계획대로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지를 **표본 점검 및 모니터링**하고 필요시 **안전감찰활동**도 전개할 예정이다.
- 황 총리는 “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**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** 지자체와 협조하여 **24시간 비상상황체계**를 가동하고,
 - 특히 백화점·터미널 등 **다중이용시설**과 철도·항공·여객선 등 **교통시설**에 대해 **안전점검**을 철저히 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진호 서울대학교 교수,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, 변상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,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, 윤영미 안실련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부회장 등 **안전분야 민간전문가 5명**이 참석했다.

※ 붙임1. 세부 안전대책 보고서
 붙임2.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추진실적

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(국민안전처)

1 소방 출동인력 확충

◇ **법정기준**(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) **대비 : 18,740명* 부족**(‘15년 말 기준)
 * 18,740명 = 법정기준(50,493명) - 현재인력(31,753명)
 ⇒ ‘16년 1,883명 충원, ‘17년부터 **新소방력 산정기준**에 따라 **소요인력을 재산정**하여 연차적 추진

□ ‘16년 확충인력 1,883명은 출동이 많은 **격무부서***에 우선 분산 배치

* 직할 안전센터(205개), 구조대(225개), 구급대(1,301개)

□ ‘소방력 산정기준’ 재설계(행자부·안전처 연구용역, ‘16.상반기)

○ **획일적인 차량별 소요인력*** 기준 → 외국사례, 실제 현장필요인력 등 객관·과학적인 산출기준 마련(방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, ‘16.하반기)

* 차량별로 기본 탑승인원 규정(예, 펌프차 4명, 구조차 6명, 구급차 3명 등)

2 노후·부족 소방장비 보강

◇ **3년간**(‘15~‘17) 소방장비 개선 4대 사업에 **총 9,811억원 집중 투입**
 (개인장비 15년 완료, 소방차 등 공용장비 ‘17년까지 완료)

* 소방안전교부세 7,628억원, 국고보조 1,856억원, 응급의료기금 327억원

□ (개인장비) ‘15년 노후율 0%, 보유율 100% 기달성

* 1,353억원 : 6종(공기호흡기, 방화복, 헬멧, 안전화, 안전장갑, 방화두건)

□ (소 방 차) ‘17년까지 노후율 0% * 보유율은 현재도 100%

* 5,020억원 : 3년간 주력 소방차(8종) 1,939대 교체

□ (구조장비) ‘17년까지 2,668억원 투자 노후율 0%, 보유율 100%

□ (구급장비) ‘17년까지 770억원 투자 보유율 100% * 노후율은 현재도 0%

3 소방차 출동로 확보

◇ 소방차 5분내 도착률 61.2%, 교통체증·불법주정차가 주원인
⇒ 소방차 주행 방해요인에 대한 법·제도적 개선대책 추진

- (신호체계 개선) 소방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(215개소, ~'18년),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·경찰 간 응원협정 체결('16.2월)
- (未양보 차량 단속 강화) 위반차량 과태료 인상(소방기본법 개정. '16.상반기)
 - *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未양보에 따른 과태료 중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소방법규에 규정하여 가중 처벌(현행, 승용 5만원, 승합 6만원 → 모든 차량 20만원)
- (주·정차 단속) 불법 주·정차 차량 즉시 견인*,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 시 소방관서와 사전 협의(주차장법 개정. '16.상반기)
 - * 지자체, 견인협회 등과 견인차량 응원요청 체계 구축('16.상반기)

4 소방공무원 폭행 및 119허위신고 방지

◇ 소방관 폭행, 허위신고 등으로 소방관 사기저하 및 신속대응 곤란
⇒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 등 원천적인 근절책 추진

1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

- (특사경 확대) 소방특사경 인원 확대('15년 1,073명 → '16년 1,893명)로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직접 대처('16.상반기)
- (장비 확충) 구급차에 CCTV 설치,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(제복에 부착) 보급('16.상반기) 등을 통한 폭행 사전억제 및 증거자료 확보
- (탑승률 제고) 구급차 3인 탑승률* 확대로 폭행발생 개연성 억제
 - * 운전자 포함 1인 탑승률(0.9%), 2인 탑승률(85.4%), 3인 탑승률(14.6%)

2 119허위신고 방지

- (허위신고 엄정 대처) 악의, 상습적 허위 신고에 대해 온정주의 탈피, 과태료 처분* 또는 형사고발 강화(손해배상청구 병행)
 - * 소방기본법에 의거 200만원 부과, 부과 실적 27건('10~'14년)

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

◇ 소방관 직무특성이 미반영된 보상제도로 소방관 사기 저하 및 부정적 여론 지속 형성

⇒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방관 처우개선대책 추진

1 재해보상제도 개선

- (치료비 부담 경감) 소방활동 시 발생한 부상치료비는 공상 판정前이라도 국가(연금공단)가 부담(공무원연금법 개정, '16.상반기)
- (치료 인정범위 확대)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화상치료(성형) 등 특수요양비 상향 조정(인사처, '16.1월)
- (공상 승인절차 간소화) 정보공유(연금공단-병원-소방관서 간), '기관사고경위조사서' 등으로 복잡한 구비서류 대체 등 승인절차 간소화

2 소방차 교통사고 시 책임 감면

- (형의 감경 또는 면제) 소방차량의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는 공익 목적 활동임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, 기소유예 적극 적용

* 소방차 운전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(도로교통법 개정, '16.1월 시행)

- (소송 지원)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소송비용* 지원이 가능한 보험 가입 의무화('16.4월)

* 변호사 선임비, 형사합의금 등

3 보수·수당 인상

- (기본급 인상) 소방장(일반직 7급 상당) 기본급 4만원 인상
- (수당 인상·신설) 위험근무수당 인상(5→6만원), 소방헬기 항공수당 신규 지급(조종사 월 20~63만원, 정비사 월 17~31만원)
- (출동가산금 인상) 현장여건을 반영 소방출동 가산금* 인상

* 4회 이상 출동 시 3천원/일 지급 → 1회 만 출동해도 3천원/일 지급

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(식약처)

①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

- (해외제조업체 등록 의무화) 모든 해외제조업체(약 55,000개소)는 수입전에 사전등록을 의무화
 -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체는 수입식품 신고 7일전 반드시 등록
- (해외제조업체 관리 강화) 수입식품 안전정보 등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(318개소)
 - 수입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 실사 등을 통해 작업장 등록
- (축산물 수입위생평가) 신규로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 수입위생평가 실시
 - 수출국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동등 이상 인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여부 결정

② 통관단계 집중 관리

- (중점관리 대상 집중 관리)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(OPERA)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을 중심 집중 검사
 - 과거 수입이력, 부적합 정보, 국내외 위해정보(회수 등) 등을 종합 분석하여 위해도(일반·주의·집중)가 높은 식품 자동 선별, 정밀검사 실시
 - * 일반 : 서류검사(0~20%), 주의 : 관능검사(21~60%), 집중 : 정밀검사(61~100%)
- (수입자 및 제품 차등관리) 국내 수입자 및 수입제품에 대하여 구분(차등) 관리
 - 국내 수입자는 과거 수입이력 등을 분석하여 구분(차등)관리
 - * (우수업체) 신속통관, (일반업체) 현행수준 관리, (특별관리업체)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집중검사
 - 수입제품은 기후변화, 새로운 위해물질 출현, 제외국의 식품 사고 등을 고려하여 구분(차등) 관리
 - * (1등급) 현행수준 검사, (2등급) 최초~5회 정밀검사 검사 강화, (3등급) 1-2년 집중 정밀검사

- (사이버구매식품 관리 강화) 수입신고 없이 수입 가능한 '해외직구 식품'은 식약처 검사 인력의 관세청 파견(출장) 및 합동 현장검사 강화
- (기후변화 대상 식품 관리) 기후변화 예측국가(미국 등 18개국) 주요품목(밀, 옥수수 등 29품목)에 대한 집중검사* 추진(2월~)

*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확대 : ('15년) 5% → ('15년) 7%

③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 강화

- (검사 명령제 확대) 수입단계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중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
 - 수입자는 매 수입신고시 마다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
 - * (현행) 일본 훈제건조어육(벤조피렌) → (신규) 중국 집성목으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(포름알데히드), 인도네시아 스넥과자류(사이클라메이트), 인도·스페인·방글라데시·파키스탄 천연향신료(금속성이물)
- (영업자 관리 강화) 수입식품등 관련 수입업 및 판매업을 통합*하여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, 교육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요건 강화
 - * (현행)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축산물수입판매업 → (통합)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
 -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·인터넷구매대행업·보관업을 신설하여 영업 등록토록 의무화하여 영업자 관리 강화

| 구 분 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|
| 수 입 前 단 계 | 제 조업 체 등 록 관 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공식품·농산물의 경우 「해외제조업체 등록제」 없음 ▪ 축산물(30개국)과 수산물(6개국)은 시행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」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등록 의무화 -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 신고 거부 가능 - 축산물은 멸균된 가공품까지 수입 위생평가 및 작업장 등록 확대 |
| | 현 지 실 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공식품·농산물에 임의 현지실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국(업소) 거부 시 조치수단 없음 ▪ 축산물과 수산물은 현지실사 시행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」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식품으로 확대 실시 - 현지실사 거부 또는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가능 |
| 통 관 단 계 | 제 조업 체 차 등 관 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외 제조업체 위생수준 분석 없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외 제조업체를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3등급 분류, 차등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정보, 과거 이력,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, 일반, 특별관리로 분류, 특별관리 업체에 검사역량 집중 |
| | 문 제 제 품 집 중 검 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품의 특성, 제조환경 고려 없이 기준·규격 중심의 검사 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새로운 위해물질 출현, 제외국 식품 사고 등 외부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제품을 3등급(일반, 주의, 집중관리) 분류, 차등 검사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중관리 제품에 검사역량 집중 |
| 유 통 단 계 | 이 력 추 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품,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단계적 시행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품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조제유류)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추적을 단계적 적용. |
| | 유 통 관 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 수거·검사계획 없음 * 매년 전체 유통식품 전체 수거검사 중 5~10% 수준으로 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통관리 계획 수립·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* 집중단속 및 추출시스템에 의한 수거검사 |

설 명절 안전대책(국민안전처)

《 추진방향 》

- ❖ 비상근무 돌입 등 **상황관리 철저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**, 사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, 대국민 홍보 등 **선제적 예방체계 구축**
- ❖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수송 및 폭설·한파 등 **분야별 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**
 - * 금년 설 연휴 전국 교통량은 전년 대비 2.8% 증가(404.7→415.9만대/일) 예상. 다만, 귀성·귀경길이 각각 3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정체 완화 전망

1 전국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

- 중앙재난안전상황실(국민안전처) 및 유관기관 종합상황실(국토·해수·농식품·복지부, 지자체 등) 24시간 가동 등 **촘촘한 상황관리체계 유지**
 - 장관 매일 상황점검회의 주재 및 근무인력 보장, 직원 사전 비상근무 예고제 및 기상 특보시 단계별 인력 보장 실시
- 전국 소방·해경·경찰관서는 특별경계근무기간(2.5~2.11, 7일간) 설정, 화재·인명구조·교통관리 등 국민안전 수요 대응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

2 점검·교육·홍보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

- 재래시장·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소방시설 점검·단속(1.18~1.29, 소방특별조사반) 및 가스·전기 합동점검(1.25~2.5, 산업부·지자체·공사) 실시
 - *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(4개반 8명)이 집중 확인·점검
- 육상(도로·역사 등)·해상(여객선, 유·도선 등)·항공(행항안전, 이·착륙시설) 등 분야별로 **특별 안전점검 실시**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
 - * 국토부(도로공사·교통안전공단) : 1.4~2.4, 철도공사 : 1.8~1.29, 해수부(해사안전감독관·운항관리자·선박검사기관) : 1.7~1.25, 공항공사 : 1.25~1.28
- 고위험(화재·폭발 등) **사업장(3,687개소)에 대한 노·사 자율 합동점검 실시** 및 지방관서의 이행여부 확인(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원)

- 설 성수품 제조·판매업자(3,500여개) 대상 유통기한 위반 등 **합동 단속·점검** 및 식품(2,500여건)·건강기능식품(200건)·의료기기(75건) 수거·검사
- 운수 종사자·직원 **안전교육**, 일반국민 대상 **홍보·캠페인** 전개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유도
 - 특히, 금년부터 **해양안전체험관** 안전교육(구명조끼 착용법·인명구조법 등) 실시 및 화재사고예방 **안전 픽토그램**(3종, 40만부) 개발·보급('16.1월)

③ 분야별 안전대책 중점 추진

- **(교통안전)** 도로·철도·항공·여객선 **특별교통대책기간**(2.5~2.10) 설정, 특별대책본부 운영 등 귀성객·귀경객 수송대책 마련
 - 불법행위 집중 단속, 2차사고 예방* 및 제설대책(대체차량·기동수리반 등), 긴급우회조치(갓길운전 허용 등) 등 **교통안전 및 소통 병행 추진**
 - * 고속도로 순찰대·119구급대(306개소)·소방헬기(30대)·닥테헬기(4대) 간 연락체계 구축 및 무료견인차량(1,904대)·안전도우미(1,600명) 등 서비스 제공
- **(폭설·한파)** 제설 취약구간(2,148개소)에 제설장비·인력* 사전 배치 및 사고 고위험 구간(790개소)에 대한 **지자체 공조 강화**
 - 한파특보 시 지자체별 「**한파대책 종합상황실**」 및 「**긴급지원반**」 가동
 - * 국토부·도로공사 : 4,863대, 4,374명 / 지자체 : 5,705대, 146,640명
- **(구제역)** 비상대책상황실 운영(2.6~2.10) 및 백신 일제접종, 전국 축산 시설 일제소독·점검(설 전·후) 등 집중 관리, 차단방역 홍보 병행
- **(사업장안전)** 고용부·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시스템 가동 및 24시간 신고체계 구축(위험상황신고실 ☎1588-3088 운영)
- **(비상진료)** 비상진료 운영기간 설정(2.6~2.10),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(복지부, 지자체) 및 당직병원·약국 등 총 **11,060개소*** 지정·운영
 - * 응급의료기관(540개), 당직 의료기관(4,260개), 휴일지킴이약국(6,260개소)

| 구분 | 안 건 |
|-----------|--|
| 1차(7.29) | <p>여름철 식품 안전대책 (식약처) * 하절기 위생취약분야 집중 관리, 자율규제체계 등</p> |
| | <p>야영장 안전대책 (문체부) * 야영장 안전기준 정착, 야영장 등록 활성화 등</p> |
| 2차(8.31) | <p>교통·철도 안전대책 (국토부, 경찰청) *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및 자동차·도로 안전관리 강화 * 철도운영자 책임과 차량·시설 안전관리 강화</p> |
| | <p>여객선 안전대책 (해수부) *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지도·감독 강화 등</p> |
| 3차(9.23) | <p>추석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 (안전처) * 추석연휴 특별안전대책기간 운영, 특별안전점검 등</p> |
| | <p>학교 안전대책 (교육부) * 안전점검 의무화, 학교별 안전지수, 통학버스 안전 강화</p> |
| | <p>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 (문체부) * 안전성 의무검사대상 기구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</p> |
| 4차(10.21) | <p>건설현장 안전대책 (국토부) * 가설구조물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, 현장이행력 제고 등</p> |
| | <p>하청근로자 안전대책 (고용부) * 위험작업 등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 등</p> |
| 5차(11.24) | <p>동절기 안전대책 (안전처) * 화재, 폭설, 시설동파 등</p> |
| | <p>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대책 (관계부처 합동) * 산업단지 단위의 체계적 안전관리, 화학물질·위험물 관리 강화 등</p> |
| 6차(12.9) | <p>안전혁신 1년 및 중점 추진과제(안전처)</p> |
| | <p>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(국조실)</p> |